

■ 수 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 참 조	현대중공업 산업재해담당
■ 발 신	<p><b>기업인권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b></p> <p>공익법센터 어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국제민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좋은기업센터 / 환경운동연합 (가나다 순)</p> <p>* 실무담당 및 연락처 : 김동현 05-587-8952 dhkim@hopeandlaw.org</p>
■ 제 목	<b>최근 현대중공업 중대 산업재해 관련 공개질의</b>
■ 날 짜	2014. 12 12. (총 3페이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업인권네트워크와 노동건강연대는 우리나라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기업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를 완화·방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시민단체 및 위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국내외의 모든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지난 2014년 9월 29일 현대중공업을 수신자로 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 질의서를 수령했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깊이 실망했으며 뭔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공개질의서를 통해서 현대중공업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4. 우리는 지난번 공개질의서에 다룬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유난히 많은 중대 산재사고(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 근로자가 모두(거의) 사내하청에 소속한 근로자들이고 이 중에는 이른바 물량팀에 속한 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기업에서 수많은 산재사고가 발생되지만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5. 우리는 최근 문제로 되고 있는 고 정범식 씨 사망사건<sup>1)</sup>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졸속적으로 자살로 종결된 과정, 사고의 수습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족을 돕고 또한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6. 우리는 올해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현대중공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공장부지 내에서 산재를 방지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믿습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비록 사내하청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이 점은 변화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원청이 사내하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확고하게 정립된 기업인권 규범입니다.<sup>2)</sup>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사내하청에 소속된 근로자가 산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현대중공업에 있으며 일단 산재가 발생하면 현대중공업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인권 규범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입은 일련의 산재사고에 대해서 그것이 현대중공업의 책임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내하청에 속한 고 정범식 씨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현대측은 사고수습에 나서기는커녕 그저 먼발치에서 방관했을 뿐입니다. 고 정범식 씨 유족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일언의 위

---

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기업인 (주) 서문 소속 근로자로, 지난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 내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2)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국제기준으로 다음 둘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이행”(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이하 이행원칙)입니다. 이행원칙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이 직접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사슬(supply chain)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II. 13. (b)).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은 현대중공업의 가치사슬에 있는 기업이며, 현대중공업의 영향력 범위(sphere of influence)안에 있으며, 더구나 현대중공업의 부지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사내하청 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의미있는 산재대책을 세울 입장도 아니고 역량도 없으며, 오직 현대중공업만이 의미있는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규범적으로 모든 사실적으로 모든,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2011년에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마땅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도 위 이행원칙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IV. 3.).

로나 사과와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 사실관계나 우리의 이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의 공식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에 속한 근로자들이 산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할 책임이 현대중공업에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까?**

**둘째,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에 속한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그것을 현대중공업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현대중공업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까?**

**셋째,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은 고 정범식 씨 사망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점, 그리고 사건발생 후에 유족의 고통을 외면했고 또한 사건수습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 우리는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한 현대중공업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서가 정확히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 및 관련담당자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고 또 공개적으로 질의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 질의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답변을 하지 않은 긍정적 답변이든 부정적 답변이든, 현대중공업 측의 답변내용은 국내사회 및 국제사회에 공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우리는 현대중공업 측의 답변을 늦어도 2014년 12월 15일까지 받기를 희망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면 한두 주 정도 더 기다릴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요청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국제적인 기업인권 규범을 존중하는 건실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